

1. 개정이유

신에너지(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와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풍력 등)가 혼용하여 사용됨에 따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0727호, 2026.03.17.공포, 2026.09.18.시행)되어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이 이관되는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6.03.17.공포, 2026.09.18.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소에너지·수소에너지설비 등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항, 제6항)

-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설비 등에 대하여 규정 신설

나. 국유재산의 임대 또는 매각의 범위와 대상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 임대·매각 가능한 국유재산을 규정하고 국유재산의 종류·위치·면적 등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반정보 확보 체계 마련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 수수료 지원 근거 마련(안 제9조의10)

- 중소기업이 수소에너지 설비 제품 인증을 받는 경우 제품심사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소에너지 설비 및 부품 공용화 품목 지정절차 마련(안 제9조의11)

- 공용화 품목 지정 요청 시 관련 서류 제출 절차를 규정하고 세부사

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함

마. 수소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절차 및 범위 규정 신설(안 제9조의12)

- 사업화 지원 신청 절차 및 지원대상 요건과 함께 시험제품 제작·설비투자 등 지원범위를 규정함

바. 수소에너지 설비 하자보수 대상 및 기간 규정 신설(안 제9조의13)

- 하자보수 의무 주체 및 대상 설비를 규정하고 하자보수 기간을 고시로 정하도록 함

사. 수소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절차 및 보고체계 규정 신설(안 제9조의14)

- 사후관리 계획 수립, 실적 보고 및 결과 제출 등 단계별 관리절차를 규정함

아.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 신청절차 마련(안 제10조의2)

- 지정 신청 시 인력양성 계획 및 운영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 폐지 등, 없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2조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1. 석탄을 액화 또는 가스화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2. 그 밖에 연료의 변환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⑥ 법 제2조제1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1.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
 - 가. 수전해설비
 - 나. 수소추출설비
 - 다. 그 밖에 광분해 등의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
2. 수소를 이용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가. 연료전지

나. 수소가스터빈

다. 그 밖에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3.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설비

가. 수소보일러

나. 그 밖에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설비

제4조의2, 제9조의10부터 제9조의14까지 및 제1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국유재산의 임대 또는 매각의 범위와 대상)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는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로 하되, 대상은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 외의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중앙관서의 장등(「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1항에 따라 정한 국유재산의 종류, 면적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10(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10제2항에 따라 그 제품심사에 드는 수수료의 일부를 해당 중소기업

업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11(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13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수소에너지의 개발·이용 및 보급 관련단체를 말한다.

② 영 제34조의25제1항에 따라 공용화 품목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 품목의 명칭·규격 및 설명서
2.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받으려는 사유
3.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의 기대효과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용화 품목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12(수소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15제1항에 따라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9서식의 수소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자체개발내역서를 포함한다.

가. 해당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로서 그 사

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나. 해당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한 국공립연구기관·대학·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자

다. 정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수소에

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3. 해당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이 지원 신청 당시 아직 사업화되지 아니한 기술임을 증명하는 자료

② 법 제25조의15제1항에 따른 수소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의15제1항제1호에 따른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의 경우 : 필요한 자금의 100퍼센트의 범위에서 용자 지원

2. 법 제25조의15제1항제3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의 경우 : 필요한 자금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자금 지원

3. 법 제25조의15제1항제4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소에너지 지원사업의 경우 : 필요한 자금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자금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소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13(수소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 ① 법 제25조의18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5조의1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급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

관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18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수소에너지 설비는 법 제25조의9제2항 및 제25조의14에 따라 설치한 설비로 한다.

③ 법 제25조의18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14(수소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19제1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장(이하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1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같은 항에 따라 고시된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소에너지 설비의 가동 상태, 구조물 외관 및 각종 부재의 체결 상태 등 점검사항

2. 수소에너지 설비별 점검시기 및 점검방법

3. 그 밖에 수소에너지 설비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시공자는 법 제25조의19제3항에 따라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을 별지 제4호의10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5월 말일까지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행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19제4항에 따라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별지 제4호의11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6월 말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공단은 이를 종합하여 별지 제4호

의11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7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12서식의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의13서식의 수소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장기 인력양성 사업계획서
 2.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 운영계획서
- 별지 제4호의9서식 부터 별지 제4호의12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제6조제1항제5호의2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5항부터제6항까지에 해당하는 설비”로 한다.

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②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

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④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서 버티포트와 관련된 설비

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

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 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제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6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

⑦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별표 1의2 제3호가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 또는 같은 조 제2호가

목·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풍력 발전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풍력 발전설비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연료전지”로 한다.

별표 8 제1호 비고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하고, 제2호다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및 수소 발전설비 등”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로 한다.

⑧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28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

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용량 1천
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제30조제2항제6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별표 11 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별 안전관리 요령

별표 16 제1호가목3)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2호의 적용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

너지를 이용하여 연료·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⑩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 에너지를 지능형전력망에 안정적으로 연계시키는 기술

⑪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1호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이 목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 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을 “재생에너지 설비,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를”로 한다.

⑫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
너지”로 한다.

수소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일반현황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업종	기업규모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타	설립일	
	담당자 성명	부서/직책	전자메일주소	
		전화번호		
기술현황	기술명칭			
	기술구분 []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 []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 정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원천기술 보유기관:)			
신청내용	신청분야 [] 시험제품 제작 [] 설비투자 [] 교육 및 홍보 [] 기타			
	총투자자금 용자: 백만원, 보조: 백만원, 자체 : 백만원, 합계: 백만원			
	사업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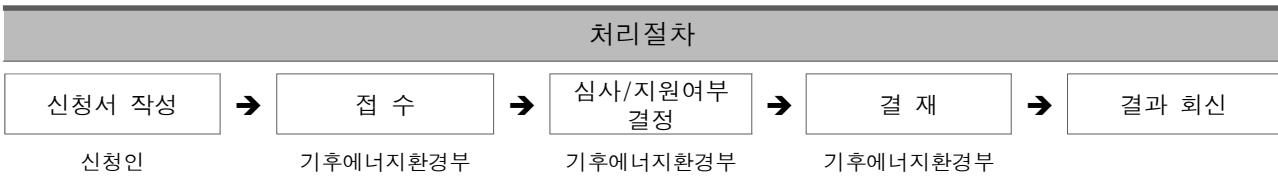
「수소경제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1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소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이 경우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자체개발내역서 1부를 포함합니다. 가. 해당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로서 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나. 해당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한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해당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자 다. 정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3. 해당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이 지원 신청 당시 아직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수수료 없 음
------	--	------------



수소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실적

1. 기본정보

설비종류	☐ 연료전지 ☐ 기타()
사후관리일자	
소유자(연락처)	
실사용자(연락처)	

2. 설비정보

설치연도			
설치위치	☐ 옥외 ☐ 옥상 ☐ 보일러실 ☐ 주차장 ☐ 건물일체형(BIPV) ☐ 기타()		
설치장소(주소)			
설치용량			
주요 부품	주요부품1	(수량 : 개)	
	주요부품2	(수량 : 개)	
	주요부품3	(수량 : 개)	
	주요부품4	(수량 : 개)	

3. 점검사항 및 가동상태

점검사항	설비의 가동상태, 구조물 외관 및 각종 부재의 체결상태, 전선피복 등 전력시설물 설치 상태, 설치된 설비의 지반 및 배수시설 등 적정 유지 상태 등		
가동상태	☐ 정상가동	☐ 가동중단(고장, 기타사유)	☐ 폐기처분
점검결과			
비 고			

※ 비고란에는 가동중단 설비의 향후계획(재가동, 폐기 등) 등을 적습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9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14제2항에 따라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공자 : (서명 또는 인)

시행기관의 장 귀하

수소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시행 결과

시행기관의 장 또는 센터의 장

우	주소	/전화()○○○-○○○○/팩스()○○○-○○○○	
담당 부서명			담당자 ○○○
문서번호:		시행일: . . .	
수 신:		발 신: 인	
제 목: 수소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시행 결과(년도)			

1. (년도) 수소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대상 현황(설비개수)

연료전지	기타	계

2. (년도) 수소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결과(설비개수)

구 분	정상가동	가동중단		폐기처분	비 고
		고 장	기 타		
연료전지					
기 타					
계					

※ 비고란에는 가동중단 설비의 향후계획(재가동, 폐기 등) 등을 적습니다.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일	
주관기관	한글			주소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수행책임자	한글 성명			영문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부서명			전화번호		
총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년)							
사업비 (백만원)	구 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계								
위탁수행기관						위탁사업비 합계 (백만원)			
참여기관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중장기 인력양성 사업계획서 1부				
	2.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운영계획서 1부				
처리절차					
신청 → 접수 및 심사 → 지정 여부 결정 → 기안 및 결재 → 결과 회신 신 청 인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결과 회신					

수소에너지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일
주관기관	한글	주소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수행 책임자	한글성명	영문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부서명	전화번호	
총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년)			
사업비 (백만원)	구 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계			
위탁 수행기관			위탁사업비 합계 (백만원)	
참여 기관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소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중장기 인력양성 사업계획서 1부 2. 수소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운영계획서 1부							
처리절차								
신청	→	접수 및 심사	→	지정 여부 결정	→	기안 및 결재	→	결과 회신
신 청 인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 ④ (생략)	제2조(정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⑤ 법 제2조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u> <u>1. 석탄을 액화 또는 가스화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u> <u>2. 그 밖에 연료의 변환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u>
<u><신설></u>	<u>⑥ 법 제2조제1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u> <u>1.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u> <u>가. 수전해설비</u> <u>나. 수소추출설비</u> <u>다. 그 밖에 광분해 등의 방식</u>

<신 설>

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

2. 수소를 이용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가. 연료전지

나. 수소가스터빈

다. 그 밖에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3.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설비

가. 수소보일러

나. 그 밖에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설비

제4조의2(국유재산의 임대 또는 매각의 범위와 대상)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는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로 하되, 대상은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 외의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중앙관서의 장등(「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신 설>

<신 설>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1항에 따라 정한 국유재산의 종류, 면적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10(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10제2항에 따라 그 제품심사에 드는 수수료의 일부를 해당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11(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13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수소에너지의 개발·이용 및 보급 관련단체를 말한다.
② 영 제34조의25제1항에 따라 공용화 품목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신 설>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 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 품목의 명칭·규격 및 설명서

2.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받으려는 사유

3.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의 기대효과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용화 품목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12(수소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15제1항에 따라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9서식의 수소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자체개발내역서를 포함한다.

가. 해당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로서 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나. 해당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한 국공립연구기관·대학·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자

다. 정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3. 해당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이 지원 신청 당시 아직 사업화되지 아니한 기술임을 증명하는 자료

② 법 제25조의15제1항에 따른 수소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의15제1항제1호에 따른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 투자의 경우 : 필요한 자금의 100퍼센트의 범위에서 융자 지원

<신 설>

2. 법 제25조의15제1항제3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의 경우 : 필요한 자금
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자금
지원

3. 법 제25조의15제1항제4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소에너지 지원사업
의 경우 : 필요한 자금의 80퍼
센트의 범위에서 자금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소에너지 기술 사
업화의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13(수소에너지 설비의 하
자보수) ① 법 제25조의18제1항
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5조의14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보급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
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18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수소에
너지 설비는 법 제25조의9제2항
및 제25조의14에 따라 설치한

<신 설>

설비로 한다.

③ 법 제25조의18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기간은 5년의 범위
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14(수소에너지 설비의 사
후관리 절차 등) ① 법 제25조
의19제1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장(이하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1월 말일까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
당 연도의 사후관리 계획을 수
립·시행하고, 같은 항에 따라
고시된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
자에게 통보하여 사후관리를 실
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소에너지 설비의 가동 상
태, 구조물 외관 및 각종 부재
의 체결 상태 등 점검사항
2. 수소에너지 설비별 점검시기
및 점검방법
3. 그 밖에 수소에너지 설비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
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

<신 설>

② 시공자는 법 제25조의19제3항에 따라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을 별지 제4호의10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5월 말일까지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행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19제4항에 따라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별지 제4호의11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6월 말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공단은 이를 종합하여 별지 제4호의11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7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12서식의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의13서식의 수소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장기 인력양성 사업계획서

2.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 운영
계획서